

붙임 1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입사지원 시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

□ 경력직

분야	구분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공인회계사 (4급)		공인회계사(KICPA)
정보보호전문가 (5급갑)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건축 (4급)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조경
전기(신호) (4급)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 철도신호
기계(소방설비) (4급)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소방

□ 일반 / 고졸

분야	구분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질 및 지반, 소음진동,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응용지질, 콘크리트, 소음진동,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소음진동,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기능사』 측량,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보선), 콘크리트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조경 건축사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조적), 건축, 조경,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능사』 조경, 실내건축, 건축목공, 조적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자응용, 소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소방설비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산업기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소방설비	『기능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승강기, 철도전기신호, 전자기기	
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기능장 통신설비	『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기능사』 무선설비, 통신선로, 전자기기,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기계	『기술사』 기계(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열관리), 건축설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소방설비, 자동차정비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철도차량정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판금제관	『산업기사』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차량(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기정비, 철도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판금, 제관),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소방설비	『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계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객화차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 () :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

□ 기능직(장비차량·궤도 정비)

- ※ 지원자격 :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정비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 아래 표에서 명시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이외는 인정하지 않음

분야	구분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제작,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공장관리,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 관리, 건축설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소방설비	기계가공조립(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차량(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판금, 제관),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 관리(보일러), 소방설비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객화차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자응용, 소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소방설비 기능장 전기	산업기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소방설비	『기능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승강기, 철도전기신호, 전자기기
전자		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기사 전자 기능장 전자기기	산업기사 전자	기능사 전자기기, 전자캐드
자동차정비		기술사 차량기술사	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 :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

□ 실무직(시설관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 이상 자격증

붙임 3

전형별 가점기준

구 분	우대사항	적용전형			부여가점 (만점기준)	비 고
		서 류	필 기	면 접		
특 별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	○	5% 또는 10%	관련법률에 의한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가점은 시간선택제 채용에 한함)
	장애인	○	○	○	5%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	5%	
	다문화가족의 자녀	○	-	-	5%	
	북한이탈주민	○	-	-	5%	
	경력단절여성	○	-	-	5%	
일 반 가 점	한국사 능력검정	○	-	-	5%	3급 이상
	공인어학성적	○	-	-	최대 2%	TOEIC, TEPS, TOEFL, HSK, JPT
	중소기업 근무경력	○	-	-	2%	실근무경력 만3년이상에 한함
자격증 가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단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응시한 자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	○	-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고졸전형에 한함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2019년, 2020년 인턴	○	○	-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에 한함
	2021년 인턴	우수인턴	○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 후 2년이내 1회
		인턴수료자	○	○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인턴수료(만근)자에 한함

-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
-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
- 특별가점, 일반가점, 자격증가점,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
-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하되, 우수인턴의 우대가점은 인턴수료(만근) 후 2년 이내 1회로 한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30%)

** (우리공단 청년인턴의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입사한 우리공단 청년인턴은 서류전형 5% 필기전형 2% 가점을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해 가점을 부여함

○ 가점 적용기준

구 분	우대사항	가점 적용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특 별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일 반 가 점	한국사 능력검정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공인어학성적	<p>※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어학성적은 토익기준 환산점수 적용 - 영어 (TOEIC, newTEPS, TOEFL) - 일본어 (JPT) / 중국어 (HSK)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평가기준 (해당가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 만점 (新 HSK 6급 300) (2.0) • 950 ~ 985 (新 HSK 6급 209 ~ 299) (1.7) • 900 ~ 945 (新 HSK 6급 180 ~ 208) (1.4) • 850 ~ 895 (新 HSK 5급 255 ~ 300) (1.1) • 800 ~ 845 (新 HSK 5급 210 ~ 254) (0.8) • 750 ~ 795 (新 HSK 5급 195 ~ 209) (0.5) • 700 ~ 745 (新 HSK 5급 180 ~ 194) (0.2) </td> </tr> </tbody> </table>	평가기준 (해당가점)
평가기준 (해당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 만점 (新 HSK 6급 300) (2.0) • 950 ~ 985 (新 HSK 6급 209 ~ 299) (1.7) • 900 ~ 945 (新 HSK 6급 180 ~ 208) (1.4) • 850 ~ 895 (新 HSK 5급 255 ~ 300) (1.1) • 800 ~ 845 (新 HSK 5급 210 ~ 254) (0.8) • 750 ~ 795 (新 HSK 5급 195 ~ 209) (0.5) • 700 ~ 745 (新 HSK 5급 180 ~ 194) (0.2) 			
중소기업 근무경력	- 실근무경력 만3년 이상		
자격증 가 점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붙임 4] 가점인정 자격증에 한함	
	일반자격증 보유자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 점	2019년, 2020년 인턴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에 한함	
	2021년 인턴	우수인턴	- 인턴수료(만근) 후 2년이내 1회
		인턴수료자	- 인턴수료(만근)일로부터 2년간 부여

불임 4

가점인정 자격증

○ 적용분야 : 사무직, 기술직, 실무직

구분 분야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공통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설안전, 품질관리, 공장관리, 교통, 소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전자계산기조작응용), 지적 [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품질관리, 공정관리), 교통,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작응용, 지적,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지적,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처리, 지적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질 및 지반, 소음진동,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응용지질, 콘크리트, 소음진동,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소음진동,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기능사』 측량,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보선), 콘크리트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조경 건축사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조작), 건축, 조경,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능사』 조경, 실내건축, 건축목공, 조작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자응용, 소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소방설비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산업기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소방설비	『기능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승강기, 철도전기신호, 전자기기
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기능장 통신설비	『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기능사』 무선설비, 통신선로, 전자기기, 전파전자통신(전파통신, 전파전자)
기계	『기술사』 기계(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열관리), 건축설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소방설비, 자동차정비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철도차량정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판금제관	『산업기사』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차량(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판금, 제관),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소방설비	『기능사』 기계기공조립(기계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객화차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 () :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

- 1) **사무직, 실무직(방호, 미화)** : 공통 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가점 인정
- 2) **기술직(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 공통 · 해당직렬 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가점 인정
- 3) **실무직(시설관리)** : 공통 · 건축 · 전기 · 기계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가점 인정

○ 적용분야 : 기능직(장비차량·궤도정비)

구분 분야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공통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설안전, 품질관리, 공장관리, 교통, 소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전자계산기조작응용), 지적 [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품질관리, 공정관리), 교통,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작응용, 지적, 빅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 품질경영,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지적,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처리, 지적			
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안전, 공장관리,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방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소방설비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철도차량정비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철도동력차기장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판금, 제관),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기공,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보일러), 소방설비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객화차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자응용, 소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소방설비 기능장 전기	산업기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소방설비	『기능사』 전기(전기, 전기기기), 승강기, 철도전기신호, 전자기기
전자	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기사 전자 기능장 전자기기	산업기사 전자	기능사 전자기기, 전자캐드
자동차정비	기술사 차량기술사	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공통 · 기계 · 전기 · 전자 · 자동차정비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가점 인정

불 임 5

실무직 근무지

근무지	주 소
1. 한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34길 29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51
2.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8길 150
3. 양수 북한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366-20 또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1-24
4. 안동 낙동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036-123번지 또는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787-1번지
5. 금정터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327-9번지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55
6. 밀양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384-17번지 또는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15길 44-5
7. 삼랑진 낙동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526번지 또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112-10번지
8. 왜관 낙동강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10길 11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적로 13
9. 원효터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길 174-54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무지개길 148-37
10. 만경강 제1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73-7 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경강남로 25
11. 금강 제1철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43-2번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465-3번지
12. 금강2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산6-1번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37
13. 화신황학터널	※ 다음 근무지 중 한 곳으로 배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산막골길 137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양주길 35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영남대로 816-22
14. 강원본부 망상수련원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170
15. 강원본부 청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불 임 6

실무직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아래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1. 근무형태

구 분	근무형태	근무주기	비 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3조 2교대	주주야야비휴	
시설관리	3조 2교대	주주야야비휴	
미화	통상근무	-	

2.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근무형태	근 무 시작시각	근 무 종료시각	근무시간	휴 식
국가중요시설 방호	주간 근무	08시	18시	8시간 2시간(중식, 휴식)
	야간 근무	18시	익일 08시	8시간 6시간(석식, 수면)
시설관리	주간 근무	08시	18시	8시간 2시간(중식, 휴식)
	야간 근무	18시	익일 08시	8시간 6시간(석식, 수면)
미 화	통상 근무	06시	15시	8시간 1시간(중식, 휴식)

불 임 7

이전지역 인재

□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우리 공단 응시자는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에 소재(이하 “이전지역”이라 함)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가)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
 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

□ 이전지역인재 해당여부 예시 (참고)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